

행 정 자 치 부

훈 계 요 구

제 목 연안어업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소홀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릉시, 삼척시, 고성군

관 련 자 ① 강릉시 ○○○○과(전 삼척시 ○○○○과)

지방○○○○○○(전 지방○○○○○○보) ○○○

② 삼척시 ○○○○센터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③ 고성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. 27.부터 2014. 7. 27.까지 삼척시 ○○○○○과에서,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1. 5.부터 2016. 1. 22.까지 삼척시 ○○○○○과에서,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2. 7. 27.부터 2014. 1. 26.까지 고성군 ○○○○○과에서 연안어업 허가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다.

강원도 삼척시 및 고성군은 [표 1]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관리단 등 불법어업 단속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54건 및 90건에 대해 어업정지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해기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.

[표 1]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행정처분 내역

시군	연도	위반행위 (통보받은 건수)	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		해기사 행정처분 요구(건)
			어업정지(건)	과징금 등(건)	
삼척시	계	54	20	34	22
	2013	20	7	13	9
	2014	16	8	8	4
	2015	18	5	13	9
고성군	계	90	13	77	27
	2013	48	10	38	18
	2014	20	-	20	3
	2015	22	3	19	6

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 제 11조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,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, 삼척시 및 고성군은 어업관리단 등 불법어업 단속기관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삼척시 및 고성군은 [표 2]과 같이 ○○해양경비안전서 등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4건(삼척시 2건, 고성군 2건)에 대하여 ○○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 2] 해기사행정처분 미 요구 현황

시군명	선 명 (톤)	어업의 종류	단속기관	어업등행정처분 현황		비 고
				구분	정지기간	
삼척시	○○호 (2.81톤)	연안자망 연안복합	○○해양 경비안전서	어업정지	'14.3.10.~4.8. (30일간)	-
	○○호 (2.81톤)	연안자망 연안복합	○○해양 경비안전서	어업정지	'15.10.20.~12.3. (25일간)	-
고성군	○○호 (2.00톤)	연안복합	○○해양 경비안전서	어업정지	'13.12.4~12.18. (15일간)	과징금
	○○○호 (1.96톤)	연안자망	○해양 경비안전서	어업정지	'13.12.4~12.25. (22일간)	과징금

조치할 사항 강릉시장, 삼척시장, 고성군수는

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